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5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. . .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사유

IMF시대의 경제적 어려움과 지방재정구조개혁 차원에서 “지방자치단체 관사 정비”를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, 우리 도에서도 도단위 관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관사관리에 관한 내용일부를 개정 보완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현행 관사 사용 대상 공무원을 도지사, 부지사, 실.국.원.장 등 소속공무원에서 이를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으로 변경함. (안 제50조)
- 현재 관사의 구분은 1급관사 : 도지사 관사, 2급관사 : 부지사 관사, 3급관사 : 3급이상 공무원 관사, 4급관사 : 1급내지 3급 이외의 관사로 구분하던 것을
- 4급 관사를 폐지하고, 1급관사 : 도지사 관사, 2급관사 : 부지사 관사, 3급관사 : 시설관리사, 기타 필요한 경우의 관사로 변경 정비하고자 함. (안 제51조)
- 기존에 우리도가 부담하던 1급내지 3급관사에 관한 보일러 운영비를 1급내지 2급으로 변경코자 함. (안 56조 3호)

□ 개정근거

지방관사 운영 개선대책 (행정자치부 공기 13330 - 154 '98. 5. 7)

□ 기타 참고자료 : 별첨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 중 “도지사, 부지사, 실·국·원·장등 소속 공무원”을 “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51조 제3호 중 “3급이상 공무원 관사”를 “시설관리사, 기타 필요한 경우의 관사”로 하고 동조 제4호를 삭제한다.

제56조 제3호 단서중 “3급”을 “2급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